

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기동 의원의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17일

○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등에 의거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하여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함(안 제4조)
-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음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- 현재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의 연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